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 규정 〉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264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 규정	2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14일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업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고용보험가입 적용 요건이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농어민 등의 소득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별 적용 요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1.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 규정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이 규정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을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직접 규정하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가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u><신 설></u>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 ----- ----- ---다음 각 호의 요건--- ----- ----- ----- ----- -----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 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신 설> <신 설> ② ~ ⑫ (생 략)	<u>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 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 는 경우</u> <u>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 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u> <u>라. 그 밖에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u> <u>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 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 을 것</u> <u>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u> <u>가. 부동산 임대업</u> <u>나.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 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 활동</u> ② ~ ⑫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9조의2제1항은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를 정하면서 “근로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 중 규모 이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56조의18은 가입대상 자영업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고 구체화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이 규정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을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현행 시행령 제56조의18을 비교하여 보면 제1호라목 “그 밖에 사업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대통령령 위임을 통해 범위를 넓힐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과 제3호의 표현이 경미하게 달라지고 시행령이 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삭제하여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인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만을 명시한 것이 다르고, 그 밖에는 현행 시행령 제56조의18과 동일하여 시행령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

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제49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특례 적용 사업을 추가 규정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면서,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특례 적용 사업을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하게 되므로 특례 적용 대상인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 및 예측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시행령에 규정하는 현행 방식이 유연한 대응에는 더욱 효과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은 법률 규정 방식과 현행과 같은 시행령 규정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수시 개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법적 안정성, 명확성과 비교 교량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시행령 제56조의18의 과거 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제1호다목은 2024. 6. 25. 개정시 추가 신설되었고, 제1호나목은 2022. 6. 28. 개정시 추가되었으며, 또한 제1호가목과 제2호의 내용 역시 2019. 6. 25. 개정시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바 있음.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하여 적용요건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적용 제외, 적용 직종,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형식인바(제8조, 제77조의2, 제77조의6 참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의 세부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피보험자 유형의 법령체계와 불일치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의 세부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 보호 필

요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에 대한 시의성 있는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